

은평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은빛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은평구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은빛주택 1·2호점)」 잔여 세대(4세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홀몸어르신은 신청서 제출 전에 공급현황, 공급일정, 신청자격 등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신청 서류의 반환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홀몸어르신 전용 공동체주택(은빛주택 1·2호점) 개요

1. 공급 개요

대상 주택	총세대	모집현황		비 고
		잔여 세대	전용면적 (㎡)	
은평구 갈현로15길 20-9 (구산동 178-38, 은빛주택1호점)	11세대	2세대	18.91㎡ (1세대) 23.02㎡ (1세대)	주민공동시설 및 승강기 있음
은평구 갈현로17가길 17 (구산동 210-14, 은빛주택2호점)	15세대	2세대	29.79㎡ (2세대)	

2. 임대 조건

공급호수	성 별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호점	204호	여	23.02	13.24	36.26	9,850,000	128,300
	301호	여	18.91	10.88	29.79	8,090,000	105,400
2호점	404호	남	29.79	6.31	36.10	15,750,000	205,100
	501호	남	29.79	6.31	36.10	15,570,000	202,800

- ▶ 표시된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임
- ▶ 표시된 임대보증금에서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2.4%임
(※유의사항 : 연 1회 전환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이 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1인가구(홀몸어르신) 4세대(잔여 세대)가 입주 가능함.
- 이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 기간 내 입주를 하여야 하며, **공동체 주택으로서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공동체주택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미 참여시 계약 및 재계약 불가)
-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서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은평구치매안심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치매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입주 가능함.
(사전 예약 후 방문, 예약 대기 가능성 있음 ☎ 02-388-8233)
(※ 검사 결과 미제출 또는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 불가)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공용공간(커뮤니티실), 주차장 등 포함 면적임.
- 이 주택은 승강기 및 공용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유지보수비, 전기 검사비, 공용공간 사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이 주택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대상은 홀몸어르신이며 **신청 시 2순위까지 희망 호수를 기재하고, 배점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희망 호수를 우선 배정함.** (※남자 2세대, 여자 2세대)
- 이 주택은 홀몸어르신 전용 공공주택이므로 본인 외의 다른 구성원이 함께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입주 자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에서 입주민에게 통보 후 퇴거 조치할 수 있음. (입주 후에도 계약 시점과 동일 조건)

- 호실별 면적과 감정평가액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음.
-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전에 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공동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될 수 있음.**

3. 임대 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대 20년 거주)**
※ 단, 재계약 시점에 은빛주택 입주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조건임.

2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 기본요건 및 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 6. 21.)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이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급신청 자격자

공 급 대 상
<p>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6. 21.) 현재 주민등록상 은평구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인 (1956. 6. 21. 이전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 홀몸 어르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로서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 은빛주택 입주자 공동체 규약 등 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자 <p>※ 주민등록상 별도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인 가구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인 신청할 수 없음.</p>

3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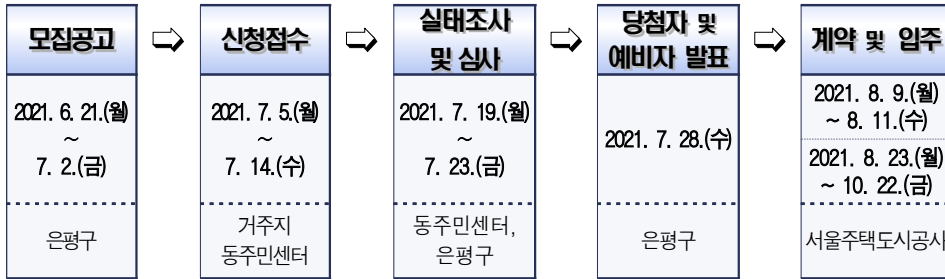
● 입주자 선정 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

-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점 요소 순으로 배점이 높은 순서를 우선함. (은평구 전입일 → 생활실태조사서)
- ※ 은평구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은평구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또는 타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은평구로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함.
- ※ 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구청 및 동주민센터로 통보하여야 함.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 안내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구비서류)
		기 준	점 수	
은 평 구 전 입 일	34	은평구 거주 연도 0년 ~ 50년	14~34점	* 40년 이상 거주 시 34점 만점
수 급 자 책 정 일	30	수급자 책정연도 2001년~2021년	10~30점	* 2001년 이전 책정자일 경우 30점 만점
대 상 자 령	25	만 65세 이상	10~25점	* 만 80세 이상 시 25점 만점
생 활 실태 조 사 서	10	주택상태	0.5~2.5점	* 동 주민센터 담당이 조사표 <붙임5> 서식에 의거 조사 * 공동주택이므로 알코올 또는 약물복용 등 공동생활 적합 여부 판단 * 개인 실태조사이므로 비공개
		공동생활	0.5~2.5점	
		건강상태	0.5~2.5점	
		사회관계	0.5~2.5점	
가점사항	1	등록장애인(경증) 국가유공자	0.5~1점	* 1개 해당 시 0.5점 * 2개 해당 시 1점

4 입주자 선정절차



※ 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상기 일정은 입주자 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개 : 2021. 6. 30.(수) ~ 7. 2.(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택공개 및 입주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중로센터 협조(☎02-6910-9437)

※ 입주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자로 최종 선정함

5 공급일정

1. 신청 접수일정

● **접수일시** : 2021. 7. 5.(월) ~ 7. 14.(수) [09:00 ~ 18:00]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84),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 6. 21.)이후 발급분 제출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① 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붙임 1>	신청자 작성	각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 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붙임 2>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③ 무주택 서약서	• 양식은 접수장소(동주민센터)에 비치 <붙임 3>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양식은 접수장소(동주민센터)에 비치 <붙임 6>		
⑤ 치매 검사 결과지	•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유선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 진행		
⑥ 거주실태 확인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 주무관 <붙임 4, 5>	공무원 작성	1부
⑦ 입주자 조사표			
⑧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자	1부
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전체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 신청자 포함)	신청자	1부
⑩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할 것	신청자	1부
⑪ 신분증	• 본인 신청 시 담당자 확인 후 서명 가능 • 자녀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제출	신청자	1부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2. 주택공개 기간

● **일 시** : 2020. 6. 30.(수) ~ 7. 2.(금)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은빛주택 1호점: 은평구 갈현로15길 20-9(구산동 178-38)

▶ 은빛주택 2호점: 은평구 갈현로17가길 17(구산동 210-14)

※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1.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2021. 7. 28.(수) 15:00 (*입주자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유선전화, 문자(SMS), 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ep.go.kr>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구청 및 동주민센터로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시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여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예비자 소진 후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자명부 발표

- **예비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과 동일
 - ▶ 신청자의 호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급호수 대비 200%까지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 ▶ 당첨자 미 계약(계약취소, 계약 후 미 입주) 및 기존 세대 퇴거 등으로 잔여 세대 발생 시 예비자의 순번대로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 잔여 세대 발생으로 이를 통보한 시점에서 입주 자격을 가진 예비자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예비자 효력은 상실됩니다.
 - 이번 모집 공고 예비자 효력은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2022. 7. 27.까지임

3. 호실 선정

- **선정방법**
 - ▶ 선정기준은 배점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신청 시 제출한 희망 호수를 우선 배정합니다.

7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형주택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연결)
- **계약일시** : 2021. 8. 9.(월) ~ 2021. 8. 11.(수)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③ 계약금 납입 영수증(계약금은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
직계가족 계약 시	상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및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계약 시	상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②신청인의 신분증, ③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④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 (주요사항 예시)

- ◆ 은평구 계속 거주 등 자격 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 추후 월 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의 월 평균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 계약 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8 입주기간

- **입주기간** : 2021. 8. 23.(월) ~ 2021. 10. 22.(금)
 - 잔금 납부 후 해당 센터와 협의하여 입주
 - *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종로센터 ☎02-6910-9437
 - * 원활한 이사를 위해 각 호별(오전 1세대, 오후 1세대)로 제한함

9 유의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전 공급 현황, 공급 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에는 신청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 기준 초과,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주택 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 기한까지 부적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 소유, 부양 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무주택기간, 소득입증,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 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최대 9회/최장 20년)
- 계약 기간 중 독립된 주거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에도 주택도시보증기금 미상환, 주택 소유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보증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 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세대주 변경 불가)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은평구에 거주하여야 함(위반 시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소유여부 및 자산 보유기준은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구청·동주민센터의 현장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 조사 요청에 대한 미 협조 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명도 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서울특별시 공동체 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임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보증보험 가입),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지속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보훈대상지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임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갱신계약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본인		-				-	
		-				-	
		-				-	
		-				-	

주)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무주택 서약서

[앞 면]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에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서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 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거주실태 사실확인서

은평구 홀몸어르신 은빛주택 입주신청자 _____는 _____동 _____번지
(_____도 로 명 주소) _____ 지하/반지하/옥탑층/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 해당 유형에 표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동주민센터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	--	-----

※ 지하, 반지하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장 첨부** 요망

--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중

은빛주택 입주자 조사표 (주택 상태 등)

□ 신청자 현황

- 성 명 : _____ (남/여)
- 생년월일 : 19 _____년 _____월 _____일(만 세)
- 주 소 : _____
- 연 락 처 : _____
- 주택정보 : 지하/반지하, 보증금 _____만원/월 _____만원
- 은평구 전입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조사표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구체적으로 기록
주택 상태 ()점	① 지하/ 반지하/ 옥탑/ 고시원/ 기타 ② 화장실 및 주방 공동사용여부 ③ 주택의 노후화 정도 1)채광, 곰팡이가 가득함 2)난방시설이 고장 났거나 개전의 여자가 없음 3)단열상태가 불량하고 도배 시급	- 해당 사항 없음 (0.5점) - 2개 해당 (1.5점) - 모두 해당 (2.5점)
공동 생활 ()점	① 성격이 원만하여 공동생활에 잘 적응 하고 타인에게 피해 줄 가능성이 없는가? ② 입주 후 공동프로그램 활동 및 구청 협조 요청에 따를 것을 동의 하는가?	- 해당 사항 없음 (0.5점) - 1개 해당 (1.5점) - 모두 해당 (2.5점)
건강 상태 ()점	① 스스로 거동이 가능 하여 밥을 혼자 지어 먹을 정도로 생활이 가능한가? ② 정신질환(우울증 및 약물복용)·알콜 중독, 치매 진단 을 받지 않았는가?	- 해당 사항 없음 (0.5점) - 1개 해당 (1.5점) - 모두 해당 (2.5점)
가족 관계 ()점	① 알코올 중독과 폭력성이 있는 자녀 가 있는가? ② 자녀와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외부인이 많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가?	- 해당 사항 없음 (0.5점) - 1개 해당 (1.5점) - 모두 해당 (2.5점)

2021년 _____월 _____일

조사 공무원	성명	○ ○ ○	(인)
--------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금을 신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제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금을 신청하거나 제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제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제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가구원 전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 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 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임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